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16 - 39호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6월 3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병만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 환경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2013~2017)’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한반도 유입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이며, 이중 몽골이 53~71%를 차지함.
- 특히 ‘몽골’은 지난 60년간 온도가 2.1℃ 상승하여 세계평균기온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영구 동토층이 30%가 감소하여 토양건조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놓여 있음.
- 사막화로 인한 황사 피해의 최우선 피해도시로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임

- 본 개정안은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에 관한 명확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지역 황사피해 저감 및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사업인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3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13(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로 하고, “연구 또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활동, 실천활동”을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실천활동, 해외조림·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시행령 - 제29조(기부·보조의 제한)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관련자료	

관련 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 · 단체에 기부 · 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서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부 · 보조의 제한) ① 삭제 <2011.9.6.>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그 밖의 공금 지출은 법 제18조에 따른 출자 및 출연을 제외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 모든 재정지출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에 따른 수목구입 등 식재비와 유지관리비 등 제반경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 신규 예산반영사항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함

4. 작성자

환경녹지국 녹색기후정책관 정 영 종